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함께 심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부칙 ----- <u>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u>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2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이상식 · 임호선 · 양부남
복기왕 · 김문수 · 이해식
윤건영 · 김승원 · 위성곤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함께 심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안 제3조제4호).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및”을 “,”으로, “수행”을 “및 방첩(防諜) 활동 수행”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u>수행</u> 5. ~ 8. (생 략)	제3조(경찰의 임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및 방첩(防諜) 활동</u> <u>수행</u> 5. ~ 8. (현행과 같음)